

제351회 임시회
2016. 10. 7.(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윤은희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심의

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변호사, 의사 중 아동분야 유경험자, 아동단체 전문가 중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회의 (안 제8조)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도지사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각종 보호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포함하였음.¹⁾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법 개정이 2012년 8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바, 충청북도에서는 향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알찬 구성과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의 위원회 주요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안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짐.
-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을 아동복지담당국장이 담당토록 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안 제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임.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도지사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참석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위원장을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 7조는 안전 심의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신청 및 회피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8조 회의에 대한 조항에서는 위원이 짝수로 구성될 수 있는 바,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 부모의 자녀 방임, 아동학대 문제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보호대상 아동과 빈곤 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충청북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남/여)	기아	미혼 부모 (혼외자 포함)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3	152 (97/55)	-	14	3	24	24	13	14	1	59
2014	154 (88/66)	3	30	-	3	38	8	13	3	56
2015	175 (83/92)	8	44	1	2	41	7	16	11	45